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술 의원 발의]

의안번호	2077
------	------

발의일자 : 2021. 4. 5.

발 의 자 : 김용술 의원

찬 성 자 : 윤영희 의원

1. 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인한 금천구 소재 소상공인의 피해복구 지원 및 증가하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근거 규정 정비(제1조, 제2조제1호)
-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3조
-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1. 4. 5. ~ 2021. 4. 12.)
- 2)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을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관내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 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재창업 지원
2. 취업 알선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사회재난” 에 따른 재난발생으로 인한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은 잠시멈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2020년 3월 22일) 이후에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붙임1】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u>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소상공인 기본법</u>」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소상공인”이란 「<u>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소상공인”이란 「<u>소상공인기본법</u>」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p>
<p><신 설></p>	<p>제5조의2(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p> <p><u>구청장은 관내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u></p> <p>1. <u>재창업 및 업종전환 지원</u></p>

2. 취업 알선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의 “사회재난”에 따른 재난발생
으로 인한 폐업 소상공인을 위
한 지원

4.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현행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7. 15.]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811호, 2015. 7. 15.,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소상공인지원계획)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사업

4. 기타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특별보증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특별보증지원의 자격요건, 선정절차, 지원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체계)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담당자를 두어 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제5조에 따른 사무는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811호, 2015.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소상공인기본법[시행 2021. 3. 9.] [법률 제17623호, 2020. 12. 08.,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1. 3. 9.] [법률 제17623호, 2020. 12. 08., 일부개정]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1. 재창업 지원
2.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시설이나 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④ 그 밖에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31.>